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의안 번호	257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5.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급증하는 주민들의 정원이용에 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설관리·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11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, 같은법 시행령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10. 1. ~ 10. 22.) 결과 : 의견 없음

(2)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지방정원”이란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조성·운영 정원으로서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정원을 말한다.
2. “정원시설”이란 지방정원 내,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, 건축물, 주차장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.

제3조(입장 및 관람시간) 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상시 개방한다.

-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,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입장 및 관람료) 지방정원의 입장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
제5조(입장 제한)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와 입장객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원시설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
2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
3. 인화물질 및 위험물,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
4.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사람.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·보행보조용 의자차(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)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5.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은 애완동물(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)과 동반 입장하는 사람

6. 그 밖에 군수가 입장 및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행위제한) ① 정원시설의 입장 및 관람자는 정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
2. 무단으로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채취하는 행위

3. 고성방가·퇴폐적인 행위·음주·흡연 등 다른 입장객 및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
4. 불 피우기·취사·야영·쓰레기 투기·무허가 상행위,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

5. 동반 입장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

6. 그 밖에 지방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원시설 입장 저지, 이용 제한, 관람 중지 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.

제7조(편의시설) 군수는 입장객 및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물품을 대여할 수 있고, 매점,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) ① 군수는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운영 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변상 등) ① 정원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·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리·운영) ① 지방정원은 군이 관리·운영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원의 관리·운영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2. 군이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 ② 정원은 조성·운영 주체,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국가정원: 국가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
2. 지방정원: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
3. 민간정원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·운영하는 정원
4. 공동체정원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, 마을·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(이하 “공동체”라 한다)이 공동으로 조성·운영하는 정원
5. 생활정원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·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·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
6. 주제정원

제18조의4(정원의 등록) ① 정원(국가정원은 제외한다)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정원의 명칭
 2. 정원의 소재지
 3. 정원 운영자의 성명·주소
 4. 정원의 시설명세서
 5.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
 6.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등록,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, 개원 및 휴원(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), 등록의 말소,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, 제12조, 제13조,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.

- 제18조의5(정원의 입장료 등) ①**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□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■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의2] <신설 2021. 6. 22.>

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(제1조의6 관련)

2. 지방정원

시설의 종류	시설의 기준
가. 정원	1) 정원의 총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. 다만, 역사적·향토적·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관할 시·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총면적을 1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. 2)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일 것
나. 체험시설·편의시설 등	1) 정원의 이용자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추되, 연간 이용 인원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2)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 것 3)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쉼터, 안내판, 음수대, 휠체어·유모차 대여시설 및 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추 것 4) 정원의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내실 및 관리실(이동식 시설을 포함한다)을 갖추 것